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전해동* · 김종민** · 이지혜*** · 이상일****

*,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선급

A Legal Study on the Ship's Nature of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Hae-Dong Jeon* · Chong-Min Kim** · Ji-Hye Lee*** · Sang-Il Lee****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Korean Register of Shipping

핵심용어 :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 선박성, 법적 검토, 선박법

Key Words :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Ship's Nature, Legal Study, Ship Act

목 차

I.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개념

II.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선박의 개념
2. 국내법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개념
3. 외국법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개념
4. 국제법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개념

2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4) 국제법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개념

유엔해양법협약 선박의 법적정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SOLAS 협약 SOLAS 협약에서는 선박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여객선, 화물선, 탱커, 어선, 원자력선 등 선종에 따른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MARPOL 협약 "해양환경에서 운항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며,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잠수선, 부유선 및 고정 또는 부양되어 있는 플랫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은 동 협약 상 선박의 범위에 포함 이 됨

2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2) 국내법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개념

선박법

-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고 규정
- 선박법에서는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박의 특성, 즉 **부유성 및 수밀성, 적재성** 등을 고려하면 **선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에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관이 없이 예인선에 의하여 직접 끌리거나 밀려 목적지로 이동해야 한다면 **부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선박법상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은 선박이라고 해석됨

2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결

- ❖ 결론적으로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선박성에 대한 의미가 많이 변해왔음. 즉 다른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구조물도 선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등대선이나 참고선과 같은 이동성이 없는 구조물, 즉 추진능력에 상관없이 선박의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부유식 LNG 벙커링 선박도 선박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First Author : hjeon@kmou.ac.kr, 051-410-5089

† Corresponding Author : silee@kmou.ac.kr, 051-410-5099